

일본, 21세기 전파법제 기본 방침 - 전파법 제도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

일본에서의 전파이용 기본법인 전파법이 1950년 제정되어 2000년으로 50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전파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필요를 인식하고 1999년 11월 30일 21세기 전파법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이 내용을 정리한다.

I. 전파를 둘러싼 환경 변화

일본의 전파이용 경위를 보면 1950년 전에는 정부 주도하에 국가의 중요 통신 이외에 해상의 인명안전확보를 위해 무선통신 등으로 한정되어 왔다. 1950년 전파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 공유 재산으로서 전파가 개방되어 관청 등의 공공 분야에 그치지 않고 항공기용 통신 등 물리적으로 유선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나 방송국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의 전기통신제도 개혁 등을 거쳐 장치나 전송방식 등 기술혁신에 의한 무선설비의 고도화, 전송용량 증대가 진행되어 지금까지 전파이용에서의 기술적 제약이 없어져 정보화 진전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에서 폭넓게 무선통신이 활용되고 있다.

1. 무선국의 증대와 주파수의 팽박

무선국수에 대해서는 기술혁신과 무선설비의 고도화 등에 의하여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4,697만국(면허를 필요로 하는 무선국에 한함)에 달하며 1993년 당시와 비교해보면 약 6배정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휴대전화 등의 이동전화 보급에 의한 것이며 휴대전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업무용 육상 이동국은 최근 5년간 약 10배로 증가했으며 무선국 전체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전 무선국 중 약 93%). 또한 1993년 이

실용화되어 온 INMARSAT 등의 인공위성 중계에 의하여 위성휴대전화, 데이터 통신을 실시하는 휴대 이동기지국 등도 대폭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무선국 수 증대에 의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전파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주파수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할당을 실시할 여지가 없으며 또한 이미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 이용상황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 무선국 수에 실제 국수가 부족하므로 한계에 달하고 있는 주파수가 있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꺾박한 이동통신용 주파수에 대해서 새로운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등 최근 무선국 종류별·이용분야별 무선국 수의 추이 등을 보면 급격하게 보급되고 있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무선 시스템 도입이 기대되고 있는 극초단파나 마이크로파가 보다 꺾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나 추가 주파수 할당을 위해서는 이용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개발이나 전송효율 향상, 재분배에 의한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

2. 전파이용의 다양화

전파이용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용분야별 주요 진전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이동통신

무선국 수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육상 이동통신분야에서의 전파이용 진전은 현저하며 특히 PHS를 포함한 이동전화 가입수는 5,000만을 넘었다. 이것은 기술 진전과 함께 휴대 단말 매진제 도입이나 신규참가 촉진에 의한 사업자간의 경쟁 활발화에 의한 단말기기의 소형화·저렴화, 서비스 요금의 저렴화, 서비스의 고품질화·다양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전화 보급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항상 어디에서든지 누구와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확보하여 일부 전문가로 한정되어 왔던 전파 이용을 폭넓게 국민 일반에게 개방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자영용 이동통신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음성이나 소용량의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동화상을 포함한 모든 정보 취급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화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¹⁾(IMT-2000)이나 차세대 교통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1)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IMT-2000: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고도도로교통시스템²⁾(ITS), 초고속·고품질 이동체 통신시스템인 멀티미디어 이동 액세스 시스템³⁾(MMAC) 등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나. 위성통신

종래부터 원거리간의 고정통신에 이용되어 온 위성통신분야에서도 안테나의 소형화, 위성 발사 비용의 저렴화나 트럭 등의 위치정보, 운송경로 등의 감리를 위한 육상 이동위성 데이터통신, Car navigation을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등이 보급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커버하는 이동위성통신의 이용 활발화와 함께 인공위성용 주파수, 궤도위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다. 고정통신

고정통신분야에서는 최근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유선설비를 부설하는 것이 곤란하며 불편한 장소에서 고정계 무선통신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지역 NTT)의 가입자 회선부분(교환국에서 가입자 가정까지)은 기본적으로 유선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구축되어 있는데 타 사업자가

이동통신의 눈부신 성장이나 고품질 통신이나 화상전송 등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IMT-2000) 도입을 위하여 국제적인 검토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징으로는 동화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통신의 전송속도 향상(최대 2Mbps), 세계 공통의 2GHz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2) 고도 도로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고도 도로교통시스템은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와 차량간을 일체화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Car navigation의 고도화, 유료 도로의 자동요금 수납, 안전운전 지원 등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며, 안전성·운송효율·쾌적성 향상,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차세대 교통시스템이다. 이미 일부 시스템은 실용화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교통정체 정보 등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도로교통 정보통신시스템(VICS: 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은 1996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을 정지하는 일없이 요금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논스톱 자동요금수납 시스템(ETC: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운용 개시할 예정이다.

3) 멀티미디어 이동 액세스시스템(MMAC: Multimedia Mobile Access Communication System)

멀티미디어 이동 액세스시스템이란 멀티미디어정보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취급 가능하며 광케이블시스템과 seamless한 접속이 가능한 초고속·고품질 이동체 통신시스템이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이동액세스의 실현에 의하여 고밀도 화상에서의 동시TV회의나 휴대TV전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같은 네트워크를 유선설비에 의하여 구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고 불편한 것이며 유선설비 대신에 무선설비를 이용한 가입자 회선부분의 네트워크⁴⁾ 구축이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 항공해상통신

항공 및 해상에서는 항해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통신수단으로서 무선통신이 활용되고 있다.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 운송량 증대, 이에 동반되는 신공항 개설 및 항공 통신시설 정비에 의하여 전파이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항공운송의 신속화, 효율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초단파(VHF)에서의 데이터통신의 디지털화가 검토되고 있다.

해상통신 분야에서는 선박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mores부호를 이용한 무선통신이 이용되어 왔는데 1999년 2월을 시작으로 위성통신이나 디지털통신 기술을 이용한 전 세계적인 해상 조난안전시스템(C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으로 이행하였으며 조난·안전통신의 고도화가 도모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통신에서도 단파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한 통신시스템 개발이 기대된다.

마. 방재(防災)통신

공공적인 용도에 대해서도 무선통신이 활용되는 분야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내재해성(耐災害性)이 우수하므로 특히 방재분야에서는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 공공단체가 정비하고 있는 방재행정무선에서는 재해정보주지를 위하여 고정계 무선, 재해정보 수집, 관계 기관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이동계 무선 등 각종 무선 통신을 조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네트워크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분야에서도 전파이용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4) 가입자계 무선 액세스시스템

각 가정·사무실 등과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기·회선설비와의 사이를 무선으로 접속하여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가입자계 무선액세스가 도입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정비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의 참가비용이 대폭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지역NTT에 의한 독점적인 서비스제공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통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에 필요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용주파수, 통신방식별로 복수의 종류가 있으며 준미리파대, 미리파대(22GHz대, 26GHz대 및 38GHz)를 사용하는 것과 PHS-WLL(1.9GHz대) 등 이미 실용화된 것도 있다.

바. 방송

방송분야에서도 종래 TV방송이나 FM·AM라디오방송 등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CS 방송) 실현, 디지털화 기술이나 다중화 기술에 의한 다채널이 진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자·데이터제공이나 소프트 배신 등 종래의 방송프로그램과는 다른 컨셉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오락·정보제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방송국에 대해서는 디지털 방송개시를 위한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3.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경쟁 진전

가. 1985년의 전기통신시장 자유화, 일본전신전화공사의 민영화 이후, 신규 참가사업자 증대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시장에서는 경쟁이 활발화 되었으며 스스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약 210개사 이었다. 또한 사업자수 뿐만 아니라 시장영역에서도 지역통신시장을 제외하고 이전의 제도적 독점사업자이었던 NTT와 KDD의 시장영역은 약 50% 전후이며 경쟁 진전은 요금의 저렴화, 서비스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이용자 편리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단, 지역통신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NTT에 의한 독점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있어서 무선통신은 네트워크의 중요한 일부이며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생산요소이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경쟁환경 형성·결정에 있어서 전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체 통신사업자에게는 전파 이용이 사업의 전제이며 이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 특성이 사업전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유선계 가입자 회선대신에 무선에 의한 지역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또한, 전기통신시장에서는 경쟁 진전과 함께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합병, 업무제공 등 업계 재편이 진전되어 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텔레콤합의에 근거하여 1998년 2월의 전기통신사업 및 전기통신업무용 무선국에 관한 외자규제 철폐나 1999년 7월의 NTT 재편성 등에 의하여 향후 일본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에서 일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둘러싼 합병, 업계 재편성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파이용 분야에서도 전기통신시장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화를 바탕으로 한 투명·공평한 면허수속 정비가 중요 과제시 되고 있다.

4. 글로벌화 진전

사회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동반하여 전파이용에 대해서도 외국의 여러 국가간의 적합성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도 그대로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IMT-2000도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주파수대역이나 통신방식 공통화를 위한 대치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에 의한 세계적인 위성 이동통신서비스도 다양한 취지에서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화 진전이나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를 정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무선통신규칙 개정이 빈번하게(2~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적인 시점에 입각하여 기동적인 일본내 주파수 할당·재분배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II. 전파법제도

1. 전파의 유효 이용 촉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파수 사용계획」 책정

가. 주파수 할당 수속 현상

1) 전파는 유한 희소한 자원이며 전파이용을 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혼신으로 인해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므로 「전파의 공평,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여 공공복지를 증진한다」(전파법 제1조) 관점에서 무선국 개설은 면허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무선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다음에서 서술한 수속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가)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선통신규칙(PR)에 따라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를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주파수를 그 지역별로 업무별 즉, 고정업무, 이동업무, 무선통신업무별로 분배되어 있다.

- 제1지역 ~ 유럽, 아프리카지역
- 제2지역 ~ 북미, 중남미지역
- 제3지역 ~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

나) 국내적인 주파수 분배

국제적인 주파수 분배를 기준으로 일본에서의 전파이용 실태, 수요동향, 기술 동향을 근거로 무선통신업무별로 일본내적인 분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배는 「주파수 할당원칙」으로 공개되어 있다.

다) 무선국 면허(주파수 지정)

면허신청을 받아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주파수 할당 가능성, 재정적 기초(방송국에 한함), 무선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의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이에 적합하다면 무선국 면허를 부여하여 무선국 면허의 지정사항으로서 각각의 무선국에 대해 주파수가 지정되고 있다.

-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의 계획적 보급이라는 요청에 따라 방송용 주파수 사용 계획으로 방송용 주파수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주파수 할당 가능성 심사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또한 전파가 팽박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전파이용 시스템 도입이나 수요증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무선국을 별도의 주파수대역으로 이행시켜 주파수 재분배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파수 이행에 대해 지금까지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의 이행

무선국의 무선설비 개장시기를 5년마다 재면허 시기에 각각의 면허인의 협력을 얻어 주파수 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나) 면허 유효기간 중의 이행

전파법 제71조에 의하여 우정대신이 주파수 지정 변경을 명령하여 이행시키고 있다. 또한, 이 경우 변경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면허의 유효기간이 무기한이었으므로 의무 선박국 관계 이행 등 한정된 사례만을 적용시키고 있다.

3) 또한, 전파의 유효이용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가) 주파수의 국제분배 및 국내분배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

- 1997년 세계무선통신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주파수의 국내분배 개정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1998년 10월)
- 2000년 세계무선통신회의에 정부잠정견해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1999년 3월)

나) 신규서비스 주파수 할당방침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

- IMT-2000 도입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1998년 7월)
- 준미리파·미리파 주파수를 이용한 새로운 가입자계 무선 액세스시스템 도입에 관한 기본적 방침에 대한 public comment 모집(1998년 9월)

다) 전파법 관계심사기준 공개(1999년 7월 전부개정)

나. 검토 배경

전파이용 필요 증대에 의하여 전파가 팽박되고 있는 중에 고도 정보통신사회를 위하여 전파자원을 한층 더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을 어떻게 실시할지 또한 새로운 전파이용 필요에 대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확보할지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구체적으로는

1) 전파의 유효이용 촉진

기술적인 문제에서 종래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용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이동통신이나 위성통신에 의한 이용이 진전되고 있으며 고정통신에서도 준마이크로파에서 준밀리파으로의 이용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파의 유효이용을 촉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아직 이용되고 있지 않았던 주파수 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며 향후 보다 중점적·효율적인 연구개발 추진, 산학관의 공동연구 촉진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주파수 할당 방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서의 서비스개발, 무선설비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기회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장기적인 방침을 책정하여 면허인이나 잠재적인 전파이용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주파수 이행의 필요성

주파수가 팽박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 도입 등을 위하여 일정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이행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지만 보다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이행기한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3) 주파수할당에 관한 정보공개

전파 이용이 국민생활에 침투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창출의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전파를 이용한 사업 전개를 희망하는 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정보공개에 노력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파수 할당에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시야에서의 주파수 사용계획 책정

1) 상기의 과제에 대응하여 한층 더 전파의 유효이용을 촉진하여 수속의 투명성·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무선통신업무별 주파수 분배 뿐만 아니라 주파수별의 무선국 목적이나 용도를 표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주파수 사용에 관한 방침을 표방한 주파수 사용계획을 책정, 공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이 계획을 지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용 주파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판단

됨과 동시에 기타 무선국의 면허신청 심사에서도 주파수 사용계획에 근거하여 주파수 할당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주파수 사용계획 책정, 공표는 기업 등이 전파를 이용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기획할 때 유익한 정보가 되며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편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면허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공표됨에 따라 스스로가 이용하고 있는 주파수에 관한 앞으로의 이용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2) 주파수 사용계획 내용으로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가) 무선통신업무별 주파수 분배, 주파수별 무선국(방송국 제외) 이용 목적과 용도

나) 장기적인 주파수 할당 방침

다) 휴대전화 시스템과 같이 그 목적, 특성 등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점용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의 무선국에 대하여 할당하고 있는 주파수대, 계열수

라) 새로운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행에 관한 계획

3) 또한, 주파수 사용계획 책정, 변경에 있어서는 전파감리심의회의 필요한 자문사항으로 정하는 등,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공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보다 신속하며 공평한 주파수 이행수속 정비

1) 전파법에서 면허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전파가 유한하므로 조약제정, 기술 발전이나 전파이용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전파의 공평·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별로 주파수 재분배를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기통신서비스 도입 등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하여 주파수 사용계획을 이행할 필요가 있는 주파수,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주파수 이행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선국 면허에 의하여 면허인에게 전파이용이 보증되는 것은 면허의 유효기간 내로 한정되어 있지만 주파수 이행이 면허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행에 관한 계획 책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절한 운용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이행기간 설정에 있어서는 관계가 있는 면허인의 무선설비 사용상황 등에 충분히 유의할 것

나) 면허인에 의한 무선설비 보수공사·갱개(更改)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으로서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것

다) 주파수 이행에 관한 계획은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책정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면허

인에의 충분한 주지를 확보할 것

- 라) ITU에서의 검토 동향 등 주파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면허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2. 투명성·공평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에 의한 무선국 면허 수속 정비

가. 현 상

전파법령에서는 면허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신청에 근거, 원칙적으로 면허신청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국의 면허신청이 경원상태인 경우의 면허처리수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방송국의 경우에는 경원상태가 발생한 경우, 비교심사에 의한 처리를 우정성령으로 정하고 있다.

나. 검토 배경

1) 최근 기술혁신에 동반하여 새로운 시스템 개발, 전기통신시장에서의 경쟁 진전 등으로 방송국 이외에서도 경원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휴대전화의 기지국 등,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 업무용 무선국이나 통신위성국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경원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기통신에 관한 업계 재편성의 활발화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투명하고 공평한 면허처리수속에 의하여 가장 전파를 유효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

2) 또한 「규제완화추진 3개년 계획 개정」(1999년 3월 30일, 행정개혁추진본부·각의 결정)등 사회적으로도 주파수 할당수속의 투명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3) 공모에 의한 무선국 면허수속 정비

가)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무선국, 통신위성국 및 방송국에 대해서는 경원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열린 형태에서의 면허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면허조건을 분명히 하여 폭넓게 면허신청을 공모해야 한다.

나) 또한, 인공위성국에 대해서는 국제조정이 필요하므로 현재 국제조정완료 후에 면허수속을 개시하고 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공평한 수속을 실시하기 위해 ITU에 수속실시 후 신속하게 국제조정의 단계에서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공모 수속을 실시해야 한다.

다) 위의 내용 이외에 무선국은 대부분이 아마추어국이나 퍼스널 무선국과 같이 전파

를 공용하는 무선국이나 기술적인 조정 등에 의해 경원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무선국이므로 신속한 면허처리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수시로 면허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적당하다.

4) 경원처리 수속 정비

가) 경원처리방법 비교

경원처리방법으로는 주로 경매방식, 추천방식, 비교심사방식 및 접수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은 각각의 이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무선국에는 다양한 종류, 이용 형태가 있으며 그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나) 공모수속을 실시하는 무선국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무선국, 통신위성국 및 방송국 등의 공모수속을 실시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폭넓게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 할당하는 것이 가능한 주파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원상태가 된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공평·신중한 수속에 근거, 가장 전파를 유효하게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게 면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교심사방식에 의한 전파법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신청 중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

- 경매방식은 수속의 투명성 등 각종 이점은 있지만 낙찰비용의 서비스요금에의 전가, 면허인예의 새로운 금전적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여러 외국의 실태를 참고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추천방식 및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 모두 전파의 유효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자를 고르는 것이 곤란하다.
- 비교심사에 의한 방법은 전파의 유효이용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자를 선정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경원처리방법으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기타 무선국

공모수속을 실시하는 무선국 이외에 대해서는 경원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신속한 면허처리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심사에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 비교심사는 적절하지 않다.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과 추천방식을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파법 제7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대해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면허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에 의하면 신속한 면허처리가 가능하지만 추천방식은 공모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보다 면허부여가 늦어진다.

라) 또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을 신청자가 제출하고 있는데 방송국 이외의 비교심사 대상이 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비교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커버지역,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계획을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

마) 비교심사 기준은 그 목적이 가장 전파를 유효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수속의 투명성·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국에 대해서는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서 비교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방송국 이외의 비교심사 대상이 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준을 책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커버지역,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 정도
- 계획실시의 확실성 정도(재정적 기초, 기술적 능력, 경영적 능력 등)
- 이용자 수용의 적합 정도, 무선국 개설의 필요성 정도
- 전파의 능률적 이용 정도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원활한 운영에의 기여정도, 기타 공공 복지를 증진하는 정도

5) 공평한 면허수속과 전파의 유효 이용을 위한 조치

가) 휴대전화 기지국 등 전국 또는 일정 지역에서의 독점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업무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일정 주파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것을 할당하는 계열수가 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신청자로부터 제출된 계획 등에 의하여 신청에 우열을 두므로 면허를 받은 자가 이후에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의 유효 이용에 반한 것이 되며 낙선한 자에게도 불공평하게 된다.

나) 따라서 비교심사에 의하여 해당 무선국 면허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커버지역, 서비스 품질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권고·공표나 주파수 삭감 등, 전파의 유효 이용, 공평한 비교심사 수속을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경우에는 수속의 투명성,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감리심의회에 지문하여 의견 청취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6) 경매 방식 검토

가) 경매방식에 대해서는 「전파자원의 유효 이용방책에 관한 간담회」가 1997년 2월에 정리한 보고서에서 「경매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수속으로 탁월한 점이 있지만 반면 방식 자체 뿐만 아니라 각 시스템에의 도입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경매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

고 정리되어 있으며 본 감담회에서도 경원처리수속 검토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나) 경매방식의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 또는 도입예정인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 주파수 할당의 투명성 · 객관성 확보
- 면허처리 수속의 신속성 확보
-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촉진
- 기회균등을 확보하여 경쟁 촉진
-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공중에게 환원

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경매방식 도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i. 서비스 요금에의 전가

경매 낙찰금의 서비스요금에의 전가에 대해서 경쟁시장에서는 서비스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경매 낙찰금의 부담이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ii. 자금력이 풍부한 자에게 주파수 집중

경매에서 낙찰되기 위해서는 거액의 초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므로 일부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 이외에는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낙찰 가능 주파수 수 또는 대역폭을 제한함에 따라 대응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iii. 경기상황과 국민생활에의 영향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매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신청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됨과 동시에 낙찰금이 서비스요금으로 전가되는 경우, 국민 이용자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라) 경매방식은 무선국 면허수속의 투명성 · 신속성과 보다 저렴한 행정 비용 실현 등의 점에서 우수한 면이 있으며 경원처리방법으로서 조기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상기 문제점의 지적이나 먼저 실시한 public comment에서의 반대 의견도 많이 있으므로 이번 경원처리수속의 정비에서 곧바로 경매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3. 사업양도에 동반되는 무선국 면허인의 지위 승계

가. 현 상

상 속	당연 승계(사후 신고)
합 병	허가에 의하여 승계 가능
선박·항공기 운전자 변경	당연 승계
상기 이외	승계 불가

1) 무선국 면허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현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원칙적으로 면허인의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전파가 유한하며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무선국 면허시, 무선국 개설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면허인이 바뀌면 그 필요성도 바꾸게 되기 때문이다.

전파법 제정시 예외로는

- 상속·합병에 대해서는 사법제도상 권리의무가 포괄승계 될 것
- 선박·항공기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자가 바뀌더라도 무선국의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 무선설비 설치가 의무화 될 것

등의 이유에서 무심사(사후신고)로 승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검토 배경

전기통신분야를 시작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재편성이 활발시 되고 있으며 분사화의 신속화 등 법적 정비도 도모되고 있는데 더욱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바람직하다.

전파는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용되므로 무선국 면허제도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세 변화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사업양도에 동반되는 무선면허 승계제도 도입

1) 기업재편의 방법으로는 합병, 회사 매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면허 승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선택 폭은 좁아진다.

즉, 사업양도가 실시된 경우, 양도인에게는 무선국 폐지, 양수인은 무선국의 신규 면허신청수속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면허신청과 경합하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업 양수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허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의한 기업재편의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편 방법	면허승계 취급
합 병	면허승계 가능
주식 취득에 의한 자회사화 주식 매점 · 주식교환 · 주식이전	사업주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면허승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합병회사 설립(영업양도에 의함)	불 가
분사화(영업양도에 의함)	불 가
기타 영업양도	불 가

2) 따라서, 면허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양도가 실시되었을 때, 해당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자는 우정대신의 허가를 받아 양도받을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인 지위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3) 또한, 면허인의 지위 승계는 사업활동의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무선국 목적 이외의 면허내용은 승계 전후에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인이 별도의 목적으로 양도인이 개설했던 무선국을 운용하려고 하는 경우나 사업 양도에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무선설비 양도가 실시된 경우에는 양도인은 무선국을 폐지, 양수인도 새로운 무선국을 신설하는 수속을 하지 않으며 안 된다.